

# 「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」 일부개정안

## 1. 개정이유

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업체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[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<2024. 11. 5.>](#) 결과에 따라 유류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가. 유가연동보조금 정의(안 제3조)

: [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<2024. 11. 5.>](#) 변경

나. 유가보조금 지급기간(안 제5조)

: (유가연동보조금) 2023년 7월 11일 ~ 2024년 12월 31일

다. 시행일

- 2024년 11월 15일('24년 11월 1일 주유·충전한 분부터 소급 적용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[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\('24.11.5.\)](#)

라. 기 타 : 해당 없음

##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고시안

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나목 중 “경제관계장관회의 <2024. 8. 28.>”를 “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<2024. 11. 5.>”로 한다.

제5조 유가연동보조금은 “2024년 10월 31일”을 “2024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고시는 2024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유가연동보조금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전 2024년 11월 1일의 주유·충전한 분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의) (생 략) 1. (생 략) 가. (생 략) 나. <u>경제관계장관회의 &lt;2024. 8. 28.&gt;</u> 결과에 따라 경유 가격 및 천연가스(CNG)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가연동보조금 2. ~ 11. (생 략)	제3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<u>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&lt;2024. 11. 5.&gt;</u> ----- ----- ----- 2. ~ 11. (현행과 같음)
제5조(유가보조금 지급기간) 유가보조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한다. 다만, 제3조제1호나목의 유가연동보조금은 2023년 7월 11일부터 <u>2024년 10월 31일</u> 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한다.	제5조(유가보조금 지급기간) 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4년 12월 31일</u> ----- -----.